

##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번호	14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3. 1998. 4. 01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

### 1. 폐지이유

공중위생법시행령(1996.6.29 대통령령 제15091호) 및 동법시행규칙(1996.8.20 보건복지부령 제32호)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징수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되어 있어 1994. 1. 11. 조례 제236호로 제정된 서울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 : 폐지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공중위생법 제43조,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  
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## 공중위생법 시행령 관련규정

---

공중위생법시행령	공중위생법 시행규칙
<p><b>제28조</b> <b>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</b></p> <p>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“처분권자”라 한다)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2와 같다.</p> <p>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전문개정 96.6.29]</p>	<p><b>제43조의2</b> <b>(과징금및과태료의 징수절차)</b></p> <p>영 제 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징금 및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. [전문개정 96.8.20]</p>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과태료금액
7. 법 제21조제2항(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개수·개선명령에 위반한 영업자등	법 제43조 제 6 호	60만원
8.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수명령 에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	법 제43조 제 6 호	40만원
9.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명령에 위반 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	법 제43조 제 6 호	60만원
10.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	법 제43조 제 7 호	70만원
11.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담 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	법 제43조 제 8 호	60만원
12.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 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정밀검사를 하지 아 니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정밀검사를 하 지 아니한 위생관리담당자	법 제43조 제 9 호 및 제10호	60만원
13.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	법 제43조 제11호	60만원

(별표 2)(신설 96.6.29)

### 과태료의 부과금액(제28조제3항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각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중처분할 때에도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#### 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과태료금액
1. 법 제7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43조 제 1 호	30만원
2. 법 제1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자 명부의 비치·기재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43조 제 2 호	10만원
3.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	법 제43조 제 3 호	10만원
4. 법 제16조(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제조업자	법 제43조 제 4 호	50만원
5. 법 제20조제1항(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	법 제43조 제 5 호	50만원
6. 법 제20조제1항(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·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	법 제43조 제 5 호	60만원